

1. 농약의 품목명 변경

농 약 명	품 목 명 (기호)		농 약 명	품 목 명 (기호)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종 소 자 약	베노람수화제	베노람수화제 (수화제 1호)	지 오 관 액 상 수 화 제	지오관 액상수화제	지오관 액상수화제 (액상수화제 9호)		
	지오람수화제	지오람수화제 (수화제 2호)		가스펜 분제	가스펜 분제 (분제10호)		
도 열 병 약	티시엠 유제	티시엠 유제 (유제 3호)	일 집 무 늬 마 림 병 약	베오진 액제	베오진 액제 (액제 1호)		
	아이비 유제	아이비 유제 (유제 1호)		베오진 분제	베오진 분제 (분제 1호)		
	아이비 분제	아이비 분제 (분제 1호)		바리신 액제	바리신 액제 (액제 2호)		
	아이비 입제	아이비 입제 (입제 1호)		바리신 분제	바리신 분제 (분제 2호)		
	부라딘 액제	부라딘 액제 (액제 2호)		훤 나 진 수 화 제	훤나진수화제 (수화제 1호)		
	가스신 액제	가스신 액제 (액제 3호)			메디 수화제	메디 수화제 (수화제 2호)	
	가스신 분제	가스신 분제 (분제 3호)		메 디 분 제	메 디 분 제 (분제 2호)		
	에디펜 유제	에디펜 유제 (유제 4호)			테람 수화제	테람 수화제 (수화제 3호)	
	에디펜 분제	에디펜 분제 (분제 4호)		다 찌 가 렌 액 제	다찌가렌액제 (액제 1호)		
	베나솔 입제	베나솔 입제 (입제 5호)			다찌가렌분제	다찌가렌분제 (분제 1호)	
	라브사이드수화제	라브사이드수화제 (수화제 6호)		잘 룩 (입 고) 병 약	이 화 명 약 나 방 약	메 프 유 제	메 프 유 제 (유제 1호)
	라브사이드분	라브사이드분제 (분제 6호)				메 프 분 제	메 프 분 제 (분제 1호)
이소란 유제	이소란 유제 (유제 7호)	다 수 진 분 제	파 프 유 제	파 프 유 제 (유제 2호)			
이소란 입제	이소란 입제 (입제 7호)		다수진 분제	다수진 분제 (분제 3호)			
트리졸수화제	트리졸수화제 (수화제 8호)	다 수 진 입 제	다수진 입제	다수진 입제 (입제 3호)			
트리졸 분제	트리졸 분제 (분제 8호)		펜치온 유제	펜치온 유제 (유제 4호)			

농 약 명	품 목 명 (기호)		농 약 명	품 목 명 (기호)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멸 구 약	칼탑 수용제	칼탑 수용제 (수용제 5호)	혹명 나방 약 도열병· 잎집무늬 마름병약 이화명 나 방·도열 병약 구·도 열병· 잎집무 늬·잎 마름 병·초 약	테라빈 분제	테라빈 분제 (분제 1호)
	칼탑 입제	칼탑 입제 (입제 5호)		피리다 유제	피리다 유제 (유제 2호)
	칼탑 분제	칼탑 분제 (분제 5호)		지오신수화제	지오신수화제 (수화제 9호)
	카보 입제	카보 입제 (입제 6호)		가스진 분제	가스진 분제 (분제 1호)
	그로메 유제	그로메 유제 (유제 7호)		가스메 분제	가스메 분제 (분제 1호)
	그로메 입제	그로메 입제 (입제 7호)		카드라 분제	카드라 분제 (분제 2호)
	그로포 입제	그로포 입제 (입제 8호)		히노깃 분제	히노깃 분제 (분제 3호)
	지오신 입제	지오신 입제 (입제 9호)		아이엠 분제	아이엠 분제 (분제 1호)
	엠아이피씨 분제	엠아이피씨분 제(분제 1호)		바리비 분제	바리비 분제 (분제 1호)
	엠아이피씨 입제	엠아이피씨입 제(입제 1호)		이사디 액제	이사디 액제 (액제 1호)
	나크 분제	나크 분제 (분제 2호)		니트펜 입제	니트펜 입제 (입제 2호)
	다수진 유제	다수진 유제 (유제 3호)		푸로닐 유제	푸로닐 유제 (유제 3호)
	비피 유제	비피 유제 (유제 4호)		이사피수화제	이사피수화제 (수화제 4호)
	비피 분제	비피 분제 (분제 4호)		부타 입제	부타 입제 (입제 5호)
	피리엠 분제	피리엠 분제 (분제 5호)		벤치오 입제	벤치오 입제 (입제 6호)
마크 분제	마크 분제 (분제 6호)	엠오 입제	엠오 입제 (입제 7호)		
머루단수화제	머루단수화제 (수화제 7호)	피페린 입제	피페린 입제 (입제 8호)		
매미충약	호리박살분제	호리박살분제 (분제 1호)	모리스 입제	모리스 입제 (입제 9호)	
파프 분제	파프 분제 (분제 2호)	모개산도입제	모개산도입제 (입제 10호)		

농 약 명	품 목 명 (기호)			농 약 명	품 목 명 (기호)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바이스	입제	바이스 입제 (입제11호)		퍼플	입제	퍼플 입제 (입제14호)
	옥사존	유제	옥사존 유제 (유제12호)		부타-300	유제	부타 300유제 (유제15호)
	벤타존	입제	벤타존 입제 (입제13호)		그로트	입제	그로트 입제 (입제16호)
	벤타존	액제	벤타존 액제 (액제13호)				

2. 농약명 변경품목

품 목 명	규 격	농 약 명	
		현 행	변 경
피리포 유제	25%	배추흰나비약	잎말이나방약
피리다 유제	30	심식나방약	혹명나방약
피레스 유제	5	배추흰나비약	잎말이나방약

3. 농약사용량 및 희석배수 변경

농 약 명	품 목 명	규격	적용병해충명	사 용 량	
				현 행	변 경
진 딿 물 약	피리모수화제	25%	배, 진딧물 감자, 진딧물	700배	1,500배
				800	1,500
응 애 약	사이틴수화제	25	감귤응애류	1,000	1,500
	펜부탄수화제	50	감귤응애	1,000	2,000
논·잡초약	퍼플입제 (입제14호)	5	벼, 논잡초 (일년생 및 다 년생잡초)	3kg	2kg
생 장 축 진 약	지베레린수용제	3.1	포도(베라웨어)	10,000배	310배
			생장축진 딸기, 생장축진	100,000~ 143,000	3,100~ 4,430 (7~10)

농 약 명	품 목 명	규격	적용병, 증명	사 용 량	
				현 행	변 경
낙 과 방 지	비나인수화제	85	토마토생장촉진	100,000	3,100 (10)
			오이, 숙기억제	20,000	620 (50)
			감자, 생장촉진	200,000~ 333,000	6,200~ 10,330 (3~5)
			국화, 생장촉진	10,000~ 14,300	310~440 (70~100)
			사과, 낙과방지	500	1,000

적용 병해충 추가품목 (83페이지에서 계속)

농 약 명	품 목 명(기호)	규 격	적용 병해충의 범위	사 용 량	
				희 태	석 수 사용량
응 애 약	지 노 멘 수 화 제	25	오이, 흰가루병	3,000	
담 배 나 방 약	프 로 펜 유 제	43	오이, 진딧물	1,500	
논 잡 초 약	옥 사 존 유 제 (유제12호)	12	기계이앙, 논잡초		500ml
작 물 건 조 약	다 이 코 액 제	20	감자, 경엽건조		500
멸 구 드 열 병 약	아 이 엠 분 제 (분제 1호)	4	벼, 애멸구 벼, 골동매미충		3kg 3
종 자 소 독 약	티 시 엠 유 제 (유제 3호)	30	목재, 곰팡이 (청병 균, 부패병균, 곰팡 이류)	200 (250g /m ²)	

4. 농약의 품목 및 적용 병해충 추가

가. 신규품목

농약명	품목명	유호성분	부		적용 병해충의 범위	사용량		비고
			명칭 또는 용	제		회	사용량	
	종	합유량	용	제	범위	회	사용량	기간
점낙엽병약	옥시돈수화제 8 Hydroxy quinolin copper	50%	제면활성제 안성제 증량제	제 4.34% 이상 제 5.0 제 나머지	사과, 접두늉낙엽병	500배		3년
흰가루병약	웨이나리 유제 α -(2-chloro phenyl)- α -(4-chlorophenyl)-5-pyrimidine methanol	12.5	유화제 용제	제 6.0 제 나머지	사과, 흰가루병 포도, 흰가루병 오이, 흰가루병	3,300 3,300 4,000		5
탄저병약	캡타폴액상 N-Tetra chloro ethyl thio tetra hydro phthalimide	39	제면활성제 보조제 안정제 용제 증량제	제 3.0 제 0.3 제 0.6 제 10.0 제 나머지	사과, 탄저병 사과, 접두늉낙엽병 오이, 노균병	600 600 500		3
이화명나방약	지오신 입제 5-Dimethyl amino -1,2,3-trithiane hydrogen oxalate	3	질색증 (모래)	제 2.5 소제 0.1 제 나머지	벼, 이화명나방 벼, 흑명나방	3~5 kg/10a 4		3

농약명	품목명	유호성분종류	분류		부용	재질유리		적용병해충의범위	사용량		약효보존기간	비고
			합유량	명칭		명칭	용도		희배	희배		
이화명 나방약	칼탐분제 (분제 5호)	1,3-bis (Carbamoyl thio)-2-(N,N-dime- thyl amino)propane hydro chloride	2	안정제	2.0	비, 이화명나방	3~4 4 4				3	
				보조제	2.0	비, 툭명나방						
				증량제	나머지	비, 버일벌레						
진딧물약	퀵테노 유제	(7-chloro-bicyclo -(3,2,0)-hepta-2,6 -dien-6-y)dimethyl phosphate	50	유화제	15.0	사과, 진딧물	2,000 1,500			2		
				안정제	4.0	배추, 진딧물						
진딧물약	디크로훈연제	0,0-dimethyl-2,2- dichloro vinyl phosphate	30			비닐하우스오이, 진 딧물	50g/ 150m ³			2		수입 완제품
과 잡 초 약	브로실수화제	5-Bromo-3-sec-butyl -6-methyl uracil	80	제면활성제	3.6	감귤, 발잡초	경양처리 300g 토양처리 200g			3		
				보조제	4.0							
발잡초약	프로린수화제	2,4-bis(isopropyl amino)-6-(methyl thio)-s-triazine	50	제면활성제	5.0	당근, 발잡초	180g			2		
				증량제	나머지							

농약명	품목명	유호성분		부제	적용병해충의 범위	사용량		약효모종기간
		종	류			희배	선사용량	
발작초약	트리린 유제	α, α, α -trifluoro-2,6-dinitro-N,N-dipropyl-p-toluidine	44.5	유화제	담리작보리, 발잡초	5.0	250ml/3	3
발잡초약	크로람 액제	3-Amino-2,5-dichloro benzoic acid	21.6	용제	콩, 발잡초	나머지	m/1,000	3
토소독약	싸이론혼중제	Methyl bromide... 14% + chloropicrin...32%	46		토마토, 시들음병		30/	2
생축진약	도마도톤액제	p-chloro phenoxy acetic acid	0.15%	용제	토마토, 썩은줄기, 갓지, 썩은줄기	나머지	50-100	5

나. 적용 병해충 추가품목

농 약 명	품 목 명(기호)	규 격	적용병해충의 범위	사 용 량	
				회 배 수	사용량
도 열 병 약	베 나 솔 입 제 (입제 5호)	6%	벼, 도열병(육묘상)		30g/ 상자
이화명나방약	카보입제(입제 6호)	3	벼, 줄기굴파리		4kg/ 10a
흑명나방약	피리다유제 (유제 2호)	30	벼, 흑명나방	750배	
			벼, 이화명나방	750	
			오이, 오이잎벌레	750	
멸 구 약	비피분제(분제 4호)	2	벼, 벼멸구		4
멸 구 약	엠아이피씨입제 (입제 1호)	4	벼, 애멸구(묘판)		3
흰가루병약	스팟트수화제	75	사과, 점무늬낙엽병	800	
흰가루병약	베노밀수화제	50	수박, 탄저병	2,000	
갯곰팡이병약	빛빈졸수화제	50	오이, 갯빛곰팡이병	1,000	
노균병약	메타실수화제	25	감자, 역병	1,000	
겉부늬병약	쿠퍼수화제	77	오이, 노균병	1,000	
탄저병약	만코지수화제	75	감자, 역병	500	
			벼, 도열병	500	
			벼, 깨씨무늬병	500	
잎말이나방약	피레스유제	5	사과, 잎말이나방	1,000	
깍지벌레약	기계유유제	95	감귤, 깍지벌레	150	
흰불나방약	주론수화제	25	사과, 잎말이나방	1,250	
굴굴나방약	오메톤액제	50	사과, 진딧물	1,000	
진딧물약	아시트수화제	50	사과, 진딧물	1,000	
진딧물약	피리모수화제	25	배추, 진딧물	1,500	
진딧물약	디실폰입제	5	벼, 애멸구(육묘상 자)		100g/ 상자
진딧물약	모노포액제	24	사과, 진딧물	800	
잎말이나방약	피리포유제	25	사과, 잎말이나방	500	
			사과, 진딧물	500	
잎말이나방약	델타린유제	1	사과, 진딧물	1,000	
			수목, 흰불나방	1,000	

<79페이지에 계속>

농약의 포장 및 표기기준

제정 ; 78.7.13 국립농업자재검사소고시제83호

변경 ; 79.1.15 " 고시 제87호

79.2.12 " 고시 제89호

80.2.19 " 고시제80-1호

80.5.27 " 고시제80-6호

81.4.8 " 고시제81-5호

81.5.9 " 고시제81-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
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15 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 13 조의 규
정에 의하여 농약의 포장 및 표

기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농약의 품질관리와 실
수요자의 농약선택 및 안전사용
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장 농약의 포장기준

제 2 조(포장의 재질 및 봉합) ① 농
약의 용기는 내용물이 변질 또
는 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야 하며 제형별 날포장의 재질
및 봉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형 별	용 기	재 질	봉 합 방 법	
분제 입제	2~3kg	○크라프트지 2중지대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 ²) 내 1면지는 0.02mm 이상 PE 또는 APP 코팅지	○주입구를 2번 접어 서 특수접착제 또는 OPP테프 봉합
		○PE내봉입 크라 프트지 2중지대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 ²) ○PE 0.03mm 이상의 내봉투	○주름지를 덮개로 한 미성봉합 ※취빌이로의 봉합은 금지한다.

4~5kg	○크라프트지 3중지대 ※상자당 4kg×6대 5kg×4대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 ²) ○내 1면지는 0.02mm 이상 PE 또는 APP 코팅지	○주입구를 2번접어서 특수접착제 또는 OPP 테프봉합 ○주름지를 덮개로 한 미싱봉합 ※쇠볼이로의 봉합은 금지한다.
7kg	○크라프트지 3중지대 ※상자당 7kg×4대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 ²) ○내 1면지는 폴리에치 렌크라프트 방습지 (KSA : 1505) 2중25 이상 ○호첩지대로 제대방 법은 KSA1541에 의 함	○주입구를 두번 접어 서 특수접착제 또는 테프봉합 ○지대의 위 아래는 반 드시 보강지로서 평 량 115g/m ² 이상의 크라프트 주름지 또 는 100g/m ² 이상의 크라프트지를 사용 하여 미싱봉합한다.
15kg	○크라프트지 4중지대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80g/m ²) ○내 1면지는 포리에 치렌 크라프트 방습 지(KSA : 1505) 2중 25이상 ○봉제지대로 제대방 법 KSA : 1541에 의 함	○지대의 위 아래는반 드시 보강지로서 평 량 115g/m ² 이상의 크라프트주름지 또 는 100g/m ² 이상의 크라프트지를 사용 하여 미싱 봉합하고 필요에 따라 접착테 프를 붙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칠납처리를 할 수 있다.
30kg	○크라프트지 5중지대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 ²) ○내 1면지는 포리에 치렌 크라프트 방습 지(KSA 1505) 2중 25이상 ○봉제지대로 제대방 법 KSA1541에 의 함.	

※1. 약제중 농약성분이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흡습성 또는 조해성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내면지가 0.03mm. P.E라 미네이손 된것을 사용하고 특수접착제로 봉합한다(4~5kg 이하).

2. 지대는 완전 충전후의 여석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3. 7kg이상의 포장지대는 다음

예시와 같이 재사용 금지를 표시하는 문구를 포장지 상단에 붉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이 포대는 농약포장지이므로 재사용을 금하고 파기하십시오.

4. 이 기준에 명시 되지 않은 분일제 포장지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명시된 차상급 규격의 기준에 준한다.

제형별	용	기	재	질	봉	합	방	법
유 액 제	○유리병 및 합성 수지병	○용도별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비선택성제초제)는 그 표시를 병상단부 위에 각인 또는 실크인쇄하고 용량표시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100ml만 병은 제외한다)	○기계병으로 하여야 한다.		○PE 속마개와 프라스틱 걸마개로 밀전한다.	○알미늄마개로 밀전하거나 수축테프 또는 자체 검사필증으로 봉합한다.	○병뚜껑 색깔은 약제별로 살균제는 분홍색, 살충제는 녹색, 제초제는 황색, 생장조절제는 청색, 혼합제 또는 동시방제용약제는 흑색, 기타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알미늄 마개는 제외한다.	
	○맹독성 농약으로 구분된 농약은 0.03mm이상의 PE봉투로 재포장하여야 한다.							

※ 농약병에 표기하는 용도별 글자의 크기는 품목명[수도용 농약의 경우는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기호(이하 “품목기호”라 한다)] 글자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제초제 농약병은 타 농약병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병모양을 변

경 제작한다.

※ 혼합제라 함은 그 유효성분이 2종이상이고 각각 다른 목적의 약제효과를 갖는 농약을 말하며 동시방제용 약제라 함은 그 유효성분이 1종이나 각각 다른 목적의 약제효과를 갖는 농약을 말한다.

제형별	용	기	재	질	봉	합	방	법
수화(용)제	○은박코팅봉투		○PE : 0.05mm이상 ○알미늄 : 0.007mm이상 ○PT 또는 OPP:0.02mm 이상 또는 PET는 0.012mm이상		○열봉접기봉합 ○주입구를 두번 접어서 특수접착제봉합 ※쇠붙이 또는 미싱봉합은 금지한다.			
	○크라프트지 2중봉투		○크라프트지 : KS규격품 (80g/m ²) ○내 1면지는 0.03mm PE 또는 APP코팅지					
	○PT코팅봉투		○PT : 0.02mm이상 ○PE : 0.05mm이상					
	○모조지 PE 코팅봉투		○PE : 0.03mm이상 ○모조지 : KS규격품 (70g/m ²)					
	○PE내봉입 크라프트지 2중봉투		○크라프트지 : KS규격품 (80g/m ²) ○PE : 0.03mm이상의 봉투					
		※수용제 또는 경시변화가 심한 농약은 은박코팅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여러개의 날포장을 넣는 걸포장(골판지 상자)은 날포장간의 부착 및 접촉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골판지 상자

○유제·액제농약 : 2중 양면 골판지(K. S. A. 1531) 2중 이상

○기타농약 : 2중 양면골판지 (K.S.A.1531) 3중 이상

2. 칸사리
여러개의 날포장을 골판지 또는 중간상자에 넣을 경우 날포장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제·액제농약은 K.S.A.1502의 양면골판지(2중), 수화(용)제 농약은 2중

양면 골판지(2중)로 하거나 합성 수지 칸사리, 기타칸사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00ml이하의 소포장농약에 대하여 날포장 상자를 사용할 때는 예외로 한다.

3. 박 트

골판지상자 상하 부위에 양면 골판지(2중) 각1매를 넣어야 한다.

4. 중간상자

100ml(100g)이하의 유리병 또는 세포장 또는 소포장 농약에 대하여는 날포장을 10개 이내씩 넣는 중간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겉포장의 결박

상하부의 안 날개와 바깥날개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봉합침으로 봉합하고 다음에 테프칩부 또는 밴드로 결박하여야 한다.

○테프칩부 : 천감테프(K.S.A. 1523)나 종이감테프(K.S.A.1522) 또는 동등이상의 테프를 사용하되 그 폭은 50mm이상으로 한다.

○밴드결박 : PP밴드로 가로 2줄 결박한다.

제 3조(자체검사필증의 재질 및 부착부위)법 제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필증의 재질 및 부착부위는 다음과 같다.

제형별	재	질	부	작	부	위						
유제 액제	○알미늄마개 밀전시 : 나사부위에 검사필증인쇄	○알미늄마개찌렁	○알미늄마개찌렁	○PE수축테프에 검사필증인쇄	○PE마개와 걸마개 밀전후 수축테프를 씌워서 열수축 시킨다.	○종이검사필증인쇄	○걸마개 밀전후 개봉부위에 특수 접착제로 붙인다.					
								분제 입제	○OPP접착테프에 검사필증인쇄	○제 2 조 제 1 항의 봉합위치에 세로로 붙인다.	○종이검사필증 인쇄	○개봉부위에 특수접착제로 붙인다

제 3 장 농약의 표기기준

제 4 조(포장의 표기) ①시행규칙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포장

의 표시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되 계량단위는 CGS단위로 영문

표기할 수 있으며 라벨의 표기 사항을 날포장 표면에 인쇄할 수 있다.

② 농약포장의 라벨 표기내용은 사전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단, 팜플

렛 등 각종 선전문은 사전에 농약 공업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농약을 약제별로 식별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날포장 라벨의 바탕색깔을 구분한다.

약 제 별	라벨바탕색깔	농약명·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상표글자색깔	기타글자색깔
		띠 색 깔	글자색깔		
살 균 제	분 홍 색	녹 색	백 색	제 조 회 사 정	녹 색
살 충 제	녹 색	적 색	"	"	흑 색
제 초 제	황 색	"	"	"	"
생 장 조 정 제	청 색	흑 색	"	"	"
맹 독 성 농 약	적 색	"	"	"	"
기 타 약 제	백 색	녹 색	"	"	"
혼 합 제 및 동 용 시 방 제 약	해 당 약 제 용 색	상 당 부 위 해 당 약 제 색	"	"	하 당 부 위 해 당 약 제 색

※ 수도용 농약의 품목명은 기타 글자의 색깔로 한다.

※ 맹독성농약, 고독성 농약(이하 “독성농약”이라 한다)과 작물잔류성 농약, 토양잔류성농약, 수질오염성농약(이하 “잔류성농약”이라 한다)의 띠색깔과 글자색깔 표기는 해당농약명 띠색깔 및 글자색깔과 동일색으로 한다.

○적용병해충의 범위(제조제, 생장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에 있어서는 적용지목 또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시기, 주의사항, 안전사

용기준, 해독방법, 특징등(분제, 입제, 수화(용)제는 약효보충기간란까지) 설명문은 백색바탕에 표기한다.

○농약포장의 라벨 표기 내용이 지워지지 않도록 특수 인쇄하고 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특수 접착제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지 라벨의 표기방법)

①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포장지 라벨 표기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각 사항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협공급분 농약은 우측상단에 농협마크를, 성분란 아래

에 공급처명을 기재한다.

- 2.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성농약과 잔류성 농약은 좌측상단에 그 글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표기한다.

“예시”

고 독 성 수질오염성 농약	수질오염성 농약
-------------------	-------------

- 3. 맹독성 농약과 흡입독이 강한 농약은 포장지 상단 중앙에 흑색 바탕에 백색으로 국제적으로 표시되는 “백골”표시를 한다.
- 4. 농약명,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및 상표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한다.
- 5. 성분표기는 약효보증기간란 아래에 기타 글자크기(색)로 표기해야 한다.
- 6. 기타글자(설명문)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은 가능한 제외하고 설명문의 내용을 최소한도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큰 글자로 표기해야 한다.
- 7. 주의사항 첫번째에 “이 농약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를 포장지 설명문보다 1호 크게 표기한다.

- 8. 제품의 특성상 저온 또는 고온으로 인한 동결이나 경시변화가 심한 농약은 “주의사항”란에 그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9. 독성농약과 잔류성 농약은 특정란 밑에 적색글자로 “이 농약은 ○○○농약이므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 10. 적용병해충 및 사용란의 크기는 조절할 수 있으며 사용법 및 사용시기, 주의사항, 안전사용기준, 해독방법, 특정란의 위치는 여백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②수도용 농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품목기호는 품목명란에 품목명 글자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한다.
- 2. 품목명은 유효성분란 옆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하되 유효성분의 글자크기로 한다. 다만,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와 앞으로 신규로 고시되는 품목(상표가 없음)은 상표란에 품목명을 표기하되 상표크기와 같이 한다.

“예시”

○품목명 표시

유효성분 : 디이소브리필 -1,
3-디지오린 -2- 이
리텐미로네이트
(이소란입제).....12%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
우

(품목명 :)
③날포장의 라벨크기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용기의 크
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제 형 별	포 장 단 위	라벨의크기	농 약 명	
			띠 의 크 기	띠 의 위 치
유 제 · 액 제	100ml	62×145 "	15×50 "	상 단 에 서 11 mm부위
	300 "	90×190 "	17×78 "	12 "
	500 "	100×210 "	17×78 "	13 "
기 타 약 제		130×190 "	24×123 "	19 "

제 형 별	품 목 명 또 는 품 목 기 호		상 표		독 성 및 잔류 성 농 약	
	띠 의 크 기	띠 의 위 치	글 자 의 크 기	글 자 의 위 치	띠 의 크 기	띠 의 위 치
유 제 · 액 제	9mm	상단에서 28mm 부위	14 급	품 목 명 또는 품 목 기 호 하 단	7 mm	상단에서 2mm부위
	11 "	31 "	16 "	"	8 "	2 "
	12 "	32 "	18 "	"	9 "	2 "
기 타 약 제	15 "	45 "	20 "	"	12 "	4 "

※ 상표는 다음과 같이 ()내에
“상표”라는 글자를 반드시 표
기하되 그 크기는 상표글자의
크기와 같다.

(상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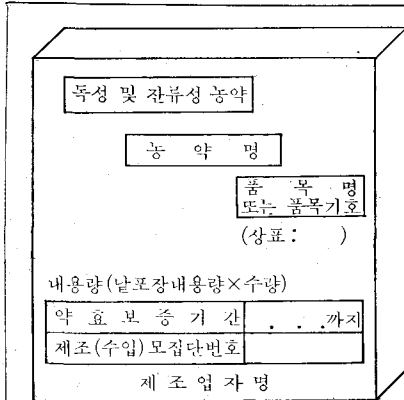
※ 상표는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띠 길이의 2/3 범위 내로 표기
한다.

※ 독성 및 잔류성농약, 농약명,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글자의
크기는 당해 띠 크기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유(액)제의 날포장중 마니라상
자를 사용할 때의 띠의 위치는
상단으로부터 4mm를 가산한 위
치로 한다.

④ 겉 포장의 전후면과 양측면
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 보증기간란은
전면과 측면에 표기하되 상자
높이가 낮아 표기가 곤란할 때
에는 여백에 표기할 수 있다.

※수도용 농약에 있어서 품목명
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와 앞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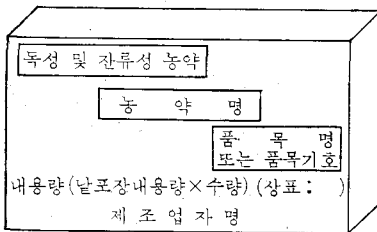
로 신규 고시되는 품목은 상표란에 제 2항 제 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품목명을 표기한다.

※ 제조(수입)모집단 번호란에 제조년도를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라벨의 경우도 또한 같다.

“예 : 81-000”

⑤ 중간상자의 전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상자높이가 낮아 표기가 곤란할 때에는 약효보증기간을 여백에 표시할 수 있다.



※수도용 농약에 있어서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와 앞으로 신규 고시되는 품목은 상표

란에 제 2항 제 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품목명을 표기한다.

⑥ 완제품 수입일 때는 제 5조 제 1항의 “별표 1” 및 제 4항 제 5항의 제조업자명란에 수입업자명 및 소재지와 제조국 및 제조원을 각각 구분표기하여야 한다.

제 6조(표기내용 승인절차) ①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제 5조 제 15조 제 17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사항만으로 표기내용(안)을 작성, 농약공업협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농약공업협회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표기내용(안)을 품목별로 검토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매월 1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농약표기 내용을 확정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이하 “자재검사소장”이라 한다)과 농약공업협회장에게 통보하고 그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확정된 농약표기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준하여 승인을

언어야 한다.

⑤ 날포장지 또는 전단, 팜플렛 등 각종 선전문이 협소하여 제 3항의 확정포기내용의 전부를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용병해충에 대한 사용법, 해독방법, 특징등의 일부를 선택게재할 수 있다. 특히 선전문등에는 상표만의 표기를 금지하고 반드시 농약명과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를 병기하여야 하며(상표의 크기는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크기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표는 반드시 상표라는 문자를 앞에 표시해야 한다) 안전 사용 기준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농약의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포장지라벨 및 선전문등에 상표의 표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 고시제 81-5호는 1981년 5월 9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수도용 농약포장재(1980년말 이월재고 포장재 제외)는 품목명란에 품목기

호의 스틱카를 붙여야한다. 다만,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는 상표란에 "품목명"이라는 글자를 표기할 다음에 품목명을 표기할 수 있으며 여백이 없는 경우는 품목기호란 좌측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수도용 농약의 품목명 표기에 있어서 유효성분란에 여백이 없어 제 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81.12.31까지제조하는 농약의 포장재에 한하여 기타 성분함유량(%)을 좌측으로 당겨 그 옆에 표기할 수 있다.

③ 수도용 농약의 품목기호표기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포장지표기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농약포장재 승인)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약 포장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재검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승인 신청서에는 자체품질 관리 시험성적서와 국공립 검사기관 또는 공인기관의 용기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자재수급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재검사소장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농약포장지 라벨표기 방법

1. 유제 또는 액제 농약

<p>(주의사항)</p> <p>※독성·약해 및 지장상의 유의사항 중 당해 제품에 특히 해당하는 사항</p> <p>(안전사용기준)</p> <table border="1"> <tr> <th>작물명</th> <th>사용시기</th> <th>사회</th> <th>용수</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작물명	사용시기	사회	용수					<p>농 협 마 크</p> <p>독성·잔류성농약</p>	<p>(적용병해충 및 사용량)</p> <table border="1"> <tr> <td>작물명</td> <td>적 용 회</td> <td>석 물</td> <td>20l(1</td> </tr> <tr> <td> </td> <td> </td> <td> </td> <td>)</td> </tr> <tr> <td> </td> <td>병해충배 수</td> <td> </td> <td>용량</td> </tr> </table>	작물명	적 용 회	석 물	20l(1)		병해충배 수		용량
	작물명	사용시기	사회	용수																		
작물명	적 용 회	석 물	20l(1																			
)																			
	병해충배 수		용량																			
<p>(해독방법)</p> <p>※중독시 응급 또는 치료방법 중 당해 제품에 특히 해당하는 사항</p> <p>(특 정)</p> <p>※과대광고나 사용자를 현혹시키는 내용과 특 정업자명의 기재금지</p>	<p>농 약 명</p> <p>내용량: l(ml)</p> <p>(상표 ;)</p> <p>약 효 보 증 기 간 . . 까지</p> <p>제 조 (수 입) 모 집 단 번 호</p> <p>(성분)</p> <p>유효성분: (수도용농약) % (약품목록명) %</p> <p>기 타 : %</p> <p>공 급 처 :</p> <p>제 조 업 자 명 :</p> <p>소 재 지 :</p>	<p>※고시사항만을 기재</p> <p>※병뚜껑의 용량은 ml입니다. (사용방법 및 사용시기)</p> <p>※적용병해충별 방제적기, 방제방법, 살포약량 등을 농민이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한다.</p> <p>○사용한 빈병은 논·밭에 버리지 마시고 마을단위 집하장에 모아 안전하게 폐기합시다.</p>																				

비고 : 1. 20~200ml/소포장의 경우 배열이 곤란할 때에는 약효보증기간란은 좌우란에 기재할 수 있다.

2. 분제·입제·수화(용)제 농약

독성 잔류성 농약

농
협
마
크

농 약 명

내용량 kg(g)

품
목
명
또
는
품
목
기
호

(상표:)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작 물 명	적용병해충	희 식 배 수	10a(300평)당 또는 물 20l(1달)당 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시기)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주 의 사 항)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안전 사용 기준)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해독방법)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특 징)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약효보증기간 . . . 까지
 제조(수입)모집단
 번 호

성분: 유효성분.....(수도용 농약 품목명).....%
 기 타.....%
 공 급 처
 제 조 업 자 명
 소 제 지

비고: 1. 기재할 사항이 적을 경우에는 1열로 기재할 수 있다.